

주택공급 지속 확대, 매력美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 **SE♡UL MゞSOUL**



2024년 주요 업무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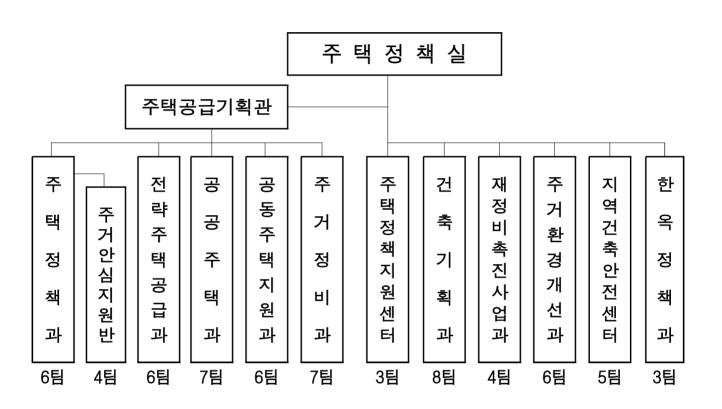
2024. 6. 17.(월)

주 택 정 책 실

I. 일반현황

조직 및 인력

● 조 직: 1실 1관 9과 2센터 1반 65팀



● 인 력: 정원 306명 / 현원 305명

(단위: 명, '24.6.기준)

구		-11		잍	! 반 ?	직	성고지 전 문 관	관 리	· 리		
	분	계	3급 이상	4급	5급	6급	7급 이하	연구직	경력관	운영직	24
정	원	306	2	11	72	114	77	1	2	3	24
현	원	305	2	10	70	99	96	1	2	4	21

※ 시간선택제임기제 23명(가급 1, 나급 6, 다급 9, 라급 6, 한시제6호 1)

예 산

● 세 입: 2,785,792백만원

(단위: 백만원)

	구		분		'24년	'23년	'23 대비	증감
	丁		正		24년	23년	증감액	증감률(%)
		계			2,785,792	3,581,975	△796,183	△22.2
일	일 반		회	계	546,394	553,669	△7,275	△1.3
특 ::	주	택	사	업	2,230,740	2,991,534	△760,794	△25.4
별회	도	시	개	발	-	-	-	-
계	학고	고용기	지부등	計금	8,658	36,772	△28,114	△76.5

● 세 출 : 4,049,134백만원(일반 1,196,165백만원, 특별 2,852,969백만원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'24년	'23년	'23 대비	증감
구 분	(예산현액)	(예산현액)	증감액	증감율(%)
계	4,049,134	4,284,712	△235,578	△5.5
주 택 정 책 과 (주거안심지원반)	1,889,807 (804,930)	2,041,916 (750,866)	△152,109 (54,064)	△7.4 (7.2)
전략주택공급과	252,144	291,414	△39,270	△13.5
공 공 주 택 과	687,447	749,143	△61,696	△8.2
공 동 주 택 지 원 과	12,477	44,326	△31,849	△71.9
주 거 정 비 과	747,790	664,117	83,673	12.6
주택정책지원센터	4,248	4,600	△352	△7.7
건 축 기 획 과	5,892	13,753	△7,861	△57.2
재정비촉진사업과	404,768	404,577	191	0.1
주 거 환 경 개 선 과	22,176	57,610	△35,434	△61.5
지역건축안전센터	1,729	1,738	△9	△0.5
한 옥 정 책 과	10,656	11,518	△862	△7.5

Ⅱ. 정책비전과 추진전략

비전

안심·안전주거공동체, 서울美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

2024 주택정책 방향

주택공급 지속 확대, 매력美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



목 표

(미래)

(매력)

〈동행〉

인략

인구·가구구조 변화에 따른

'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'

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

'글로벌 도시·주거지 조성'

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

'주거약자와의 동행'

Ⅲ. 주요 업무계획

① 미래사회 대비한 안정적 新주택 공급 추진

② 매력美 넘치는 도시·주거공간 조성

③ **'주거약자와의 동행'지속 추진**

① 미래사회 대비한 안정적 新주택 공급 추진

- 1. 저출생 대응 위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
- 2. 다양한 유형의 매입임대주택 공급
- 3. 어르신 안심주택 운영기준 제정
- 4. 공공기관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추진
- 5.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
- 6.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 강화
- 7.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 마련
- 8.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및 관리기준 개선
- 9.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자문 활성화

① 미래사회 대비한 안정적 新주택 공급 추진

- 10.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(변경안) 시행
- 11. 중산시범·회현시민APT 개발 추진 및 활성화
- 12.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추진
- 13. 2024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실시
- 14.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추진
- 15. 풍수해 대비 민간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
- 16.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
- 17.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마련

1 저출생 대응 위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

저출생 대응위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통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 II (SHift2)과 신혼부부 안심주택 추진

□ 추진배경

- o '23년 서울시 합계출산율 0.55명(잠정치)으로 전국 최저수준 기록
- ㅇ 신혼부부 자녀계획시 고려사항 1순위는 주거문제로 저출생에 큰 영향

□ 사업개요

◈ 장기전세주택 II (SHift2) 핵심 내용 ◈

- ◆ (입주자격)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입주
- ◆ (인센티브) 입주이후 자녀 출산시 인센티브 * 출산인정 시점 :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

	신혼부부 입주 시	1자녀 출산 시	2자녀 출 산 시	3자녀 이상 출산 시
거주기간	최장 10년	최장 20년	최장 20년	최장 20년
소득기준	◦ 60㎡이하 월평균소득120% (맛벌이 180%) ◦ 60㎡초과 월평균소득150% (맛벌이 200%)	소득기준 20%p 완화 (재계약시)	소득기준 40% p 완화 (재계약시)	소득기준 60%p 완화 (재계약시)
우선매수청구권	×	×	0	0
매매가격인센티브	×	×	(시세 90%)	(시세 80%)

- ◆ (소득기준 완화) 중산층 및 실수요자 입주 위한 소득기준 완화(※국토부 협의사항)
 - * 60 m'이하 월평균소득 100% → 120%(맞벌이 180%). 60 m'초과 120% → 150%(맞벌이 200%)
- ◆ (평형이동) 출산으로 자녀수 증가시 주거 이전 지원
 - ✓ 신혼부부 안심주택 포함 4,396호(향후 3년간) 공급, 최초공급 '24.7월 둔촌주공 300세대
 - ✓ 이후 역세권장기전세·매입임대 등 포함, 신혼부부 공공주택 연간 4천호* 공급
 ^{*}매년 혼인부부 3.6천쌍의 10% 이상

주택정책과장 : 공병엽 ☎2133-7010 주택정책팀장 : 김장열 ☎7012 담당: 정주영 ☎7013 주거안심지원반장: 홍성수 ☎2133-9573 주거안심총괄팀장: 우성탁 ☎9574 담당: 서영진 ☎9577 공공주택과장 : 신동권 ☎2133-7050 공공주택정책팀장: 이화섭 ☎7057 담당: 김민정 ☎7068 전략주택공급과장: 최원석 ☎2133-6280 청년주택계획팀장: 김 훈 ☎6290 담당: 문연걸 ☎6291

① 장기전세주택Ⅱ(SHift2) 공급

- ㅇ (추진근거) 공공주택 특별법,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 조례 시행규칙
 -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2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
 -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
- ㅇ (공급방식) 입주시 10년 거주(임대), 자녀 출산시 20년 거주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
- o (입주대상)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*(무자녀, 유자녀 가구 포함)
 - *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한 날(혼인신고일)로부터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할 예정인 사람
 - **입주자 선정기준(소득기준) 완화** ※ 국토부 협의 선행

전용면적 60 m 이하 (현행)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

⇒ (완화)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(맞벌이 180%) 이하

[전용면적 60 m 초과] (현행)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 이하

- ➡ (**완화**) 도시근로자 가구당 **월평균소득 150%**(맞벌이 200%) **이하**
- **자산기준**(국토부 고시) : 부동산 21,550만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원 이하인 사람
- o (공급물량) 향후 3년간('24~'26) 2,396호 공급
 - **건설형** 총 927호(구룡마을 300호, 성뒤마을 175호, 송파창의혁신 120호 등)
 - <u>매입형</u> 총 1,469호(둔촌주공 300호, 자양1 177호, 미성크로바 76호 등)



②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

- ㅇ (추진근거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
- o (공급방식) 신혼부부 소득수준을 고려한 임대+자가(분양) 혼합형 추진

 임대주택 (70%)
 • (공공임대 20% ± α)
 신혼부부 전용(혼인예정자 포함)

 • (민간임대 50% + α)
 • (민간분양 30%)
 가구 인원 및 연령제한 없음

 ※ 민영주택 분양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비중 확대 (약 30%)

- o (입주대상)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(맞벌이 90% 이하) * 공공임대
- o (출산인센티브) 공공임대 20년 거주 후, 우선매수청구권 부여

 * 2자녀 이상 출산시 장기전세주택॥(SHift2)와 혜택 동일

 민간임대 10년 거주 후, 우선양도권 부여
- o (대 상 지) 역세권 250m(심의통해 350m), 간선도로변 50m 내외
- o (주 거 비) 공공임대(주변시세 50%수준), 민간임대(주변시세 70-85%수준)
- o (주거공간) 신혼부부 특화평면(알파룸 등) 및 맞춤형 보육관련 시설 설치
- o (사업지원) 건설자금 대출(최대 240억) 및 이자 차액 보전(최대 2%)
- ㅇ (공급물량) 향후 3년간('24~'26) 2,000호 공급

□ 향후계획

- o 장기전세주택Ⅱ(SHift2) 입주자격 국토부협의, 조례 제정 '24.6.~ 7.
- 장기전세주택 II (SHift2) 모집공고(최초공급 둔촌주공 300호), 신혼부부 안심주택

 인·허가 등 본격 사업 추진
 '24. 7.

참고자료1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위한 제도개선 요구사항

① 장기전세주택 □ (SHift2) 소득기준 완화 ※ 국토부 협의사항

구분	현 행 장기전세 주택 I	<mark>완화</mark> 장기전세주택 II (SHift2)
	60㎡이하 월평균소득 100%	60㎡이하 월평균소득 120%
소득 기준	60㎡초과 85㎡이하 월평균소득 120%	(맞벌이 180%) 60㎡초과 월평균소득 150%
	85㎡초과 월평균소득 150%	(맞벌이 200%)

※ 출산 자녀수에 따른 재계약시 월평균 소득기준 20%p씩 완화 (1자녀 출산 20%p, 2자녀 출산 40%p, 3자녀 이상 출산 60%p 완화)

(참 고)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

구분	2인가구	3인가구				
월평균소득 120%	649만원	863만원	989.8만원	1,053만원		
월평균소득 150%	812만원	1,079만원	1,237만원	1,316만원		
월평균소득 180%	974만원	1,295만원	1,484만원	1,579만원		
월평균소득 200%	1,083만원	1,439만원	1,649만원	1,755만원		

②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※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사항

구분	현 행 면적기준	개 정 면적기준
세대원 수 1명	전용면적 35㎡ 이하의 주택	전용면적 40㎡ 이하의 주택
세대원 수 2명	전용면적 25㎡ 초과 44㎡ 이하의 주택	전용면적 25㎡ 초과 49㎡ 이하의 주택
세대원 수 3명	전용면적 35㎡ 초과 50㎡ 이하의 주택	전용면적 35㎡ 초과 59㎡ 이하의 주택
세대원 수 4명 이상	전용면적 44㎡를 초과하는 주택	전용면적 49㎡를 초과하는 주택

참고자료2 장기전세주택 II (SHift2) 공급대상지 세부현황

□ 건설형 : 927호

	공공임대 중	장기전세 물량
사 업 명	장기전세주택 (세대수)	장기전세주택Ⅱ(SHift2) 1) (세대수)
합계	1,902	927
위례A1-14BL	185	90
마곡택시차고지(마곡16단지)	124	61
송파창의혁신구역	240	120
장지 차고지	329	154
관악문화플라자	54	27
성뒤마을	370	175
구룡마을 도시개발	600	300

□ 매입형 : 1,469호

o 둔촌주공('24년 하반기, 300호), 자양1('25년 상반기, 177호), 미성크로바('25년 하반기, 76호), 잠실진주('25년 하반기, 109호) 등 ※ 추후 공급물량변동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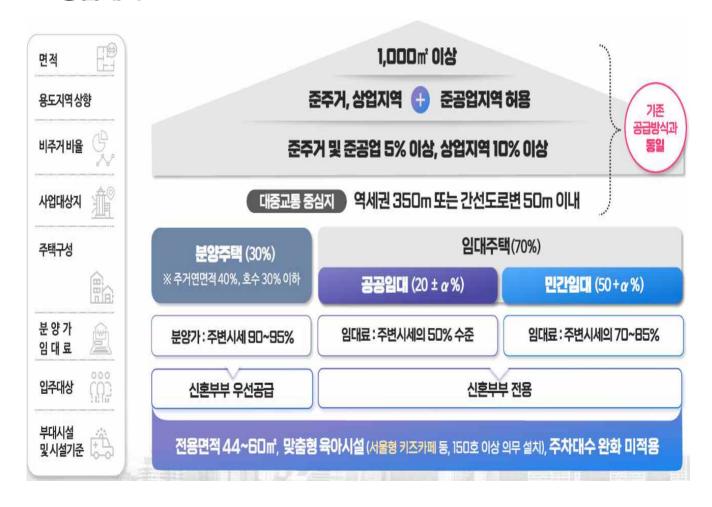
¹⁾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[별표4]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%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가능

참고자료3 신혼부부 안심주택 세부내용

사업대상지



□ 공급계획



□ 용적률 체계

ㅇ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

용도지역	기정	제2종	제3종	제2종	제3종	준주거	제2종	제3종	준주거	근린상업	
	변경	준격	두거	근린상업			일반상업				
기 본용 적률(%)		40	00		540			680		700	
공공기0	념율(%)	15	10	25	20	10	30	25	20	10	
상한 용 적률(%)		50	00		900			1,	300		

ㅇ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

구분	준주거		근린상업		일반상업				
기 본용 적률(%)	500	600	700	800	800	900	1,000		
공공 기여율(%)	6	8	10	12	10	12	14		
상한 용 적률(%)	575~600		900			1,300			

(참고1) 용적률 체계도(예시)



(참고2) 청년 안심주택 및 신혼부부 안심주택 비교

구분	청년 안심주택	신혼부부 안심주택				
공급유형	호수 100% 임대(공공・민간)	호수 70% 임대, 호수 30% 분양				
대상지	역세권, 간선도로변	좌동				
SH선매입	공급물량의 30% 내외	해당 없음				
건축기준	용도지역 상향, 용적률·건폐율·주차장 완화	좌동(단, 주차장 완화 제외)				
주거규모	1인: 최소23㎡ 이상, 2인: 최소 40㎡ 이상	최소 44㎡ 이상, 최대 60㎡ 이하				
임차인지원	최대 6천만원	좌동				
의무사항	_	신혼부부 맞춤형 보육 관련 시설 설치				
건설지원	대출 최대 240억원, 건설자금 이자치액지원 2%	좌동				
세제지원	취득세ㆍ재산세ㆍ양도소득세 등 감면	좌동 (분양분 제외)				

2 다양한 유형의 매입임대주택 공급

다가구·다세대·반지하주택 등 매입을 통해 청년, 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에게 양호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도모

□ 사업개요

- ㅇ 매입대상 : 신축 주택, 구축 아파트, 반지하 주택 중 매도 신청한 주택
- ㅇ 매입기준
 - (1) 철거 후 신축매입 약정 : 동 단위 매입(집주인 거주공간 제외 매입허용)
 - ②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: 동 단위 매입(다가구), 세대단위 매입(다세대, 연립)
 - ③ (신규) 기존 아파트 매입 : 호별 매입, 국토부 완화기준 충족시 건령제한 완화 가능
 - 4 (신규) 신축주택 매입 : 건령 3년이내, 동별매입 우선, 호별매입 가능
 - ⑤ (신규)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: 우선매수권 활용 경매 참여, 협의 매입
- 목표물량 : 3,951호(반지하 704호(일반 604, 공공원룸 50, 커뮤니티 50) 비주거용으로 활용)
- o '24년 예산 : 713,644백만원(국비 441,859, 시비 271,785) ※ 전세사기주택 전액 국비

□ 추진현황

o '24년 매입임대주택 1차 매입공고(4.23.)

- 접수기간 : (반지하) 상시 / (아파트·신축) 5.24까지 / (신축약정) 5.31.까지

- 접수현황 : 5,808호('24.6.4.기준)

							구축매입					,	신축매입약정		
•	7	4	소계		(일반		공공	3원룸	커뮤니티 (반지하)	전세네기	소계	청년 이버 기스시		신혼ㅣ
			꼬게	소계	지상	반지하	아파트신축	지상	반지하	(반지하)		324	일반 기숙사	일반 기숙사	선존 1
5	2집	3,951	3,239	2,439	835	604	1,000	100	50	50	600	712	500		212
잩	İ 수	5,808	1,153	1,153	236	197	720	_	-	_	_	4,655	3,025	977	653

※ 전세사기피해주택은 5.27. 정부대책 반영하여 매입공고(6월중) 예정

□ 향후계획

ㅇ 매입절차 이행. 미매입 물량에 대해 추가 매입공고 및 홍보 '24. 6.~

작 성 자 | 주택정책과장: 공병엽 ☎2133-7010 주택정책팀장: 김장열 ☎7012 담당: 김성배 ☎7014

3 어르신 안심주택 운영기준 제정

어르신들의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주택유형인 '어르신 안심주택' 공급을 위한 운영기준을 제정하고, 체계적으로 어른신 안심주택 공급 추진

□ 사업개요

- o (사업방식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
- o (공급방식) 연령대별 1·2인 가구 고려, 의무 부대시설 갖춘 임대 + 분양주택

임대주택 (80%)	 (공공임대 20% ± α) 65세 이상 어르신 1~2인 가구 (민간임대 50% + α) 65세 이상 어르신 및 청년 1~2인가구
분양주택	• (민간분양 20%) 가구 인원 및 연령제한 없음
(20%)	※ 어르신, 청년,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"세대통합형 안심주택"으로 일부 활용

- ㅇ (사업대상지) 교통이 편리하고, 인근 의료시설이 있는 곳
 - 교통 중심지 역세권 250m(심의 통해 350m 허용) + 간선도로변 50m 내외
 - **의료법인** 병원, 보건기관 350m 이내 (총 85곳)

□ 운영기준 주요내용

- o (제1장 총칙)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정의
- o (제2장 사업대상지 및 유형) 사업대상지, 사업유형
- ㅇ (제3장 사업계획 수립기준) 용도지역 변경, 용적률 및 공공기여, 건축계획
- ㅇ (제4장 공급 및 운영기준) 입주대상자, 임대주택공급, 운영자문 운영

□ 추진현황

- ㅇ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'24. 3.15.
- o 어르신안심주택 추진계획 수립(행정2부시장방침 제83호) '24. 4.11.
- o 어르신안심주택 사업자 컨설팅(40개소) '24. 2. 1.~
- o 어르신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정 '24. 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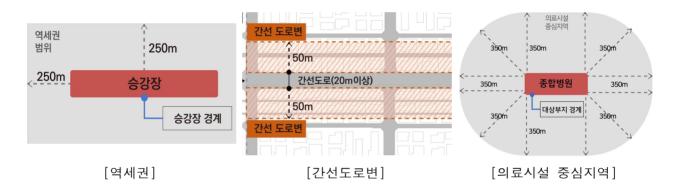
□ 향후계획

o 인·허가 등 본격 사업 추진 '24. 6.

참고자료 어르신 안심주택 주요 운영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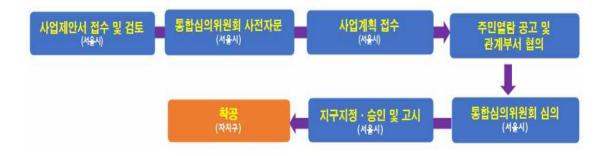
□ 적용범위

- 다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 안에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건립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
 - 대중교통(역세권, 간선도로변)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
 - ▶ 역세권 :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250m 이내(위원회에서 350m 완화 가능)
 - ▶ 간선도로변 : 폭 20m 이상 간선도로의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50m 이내
 - ▶ 의료시설 중심지역 : 의료시설 대상부지 경계로부터 350m 이내
 - ※ 자연녹지·제1종일반주거의 경우, 대상지 적용범위와 상관없이 부지면적 5,000 m²이상인 경우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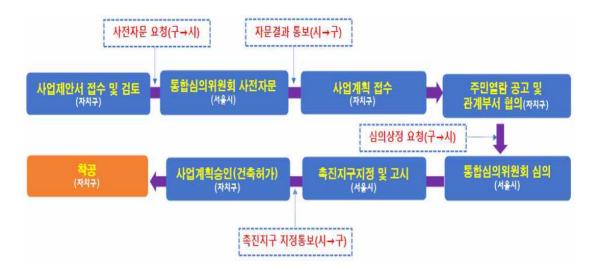


□ 사업유형

- ㅇ 어르신안심주택 사업유형
 -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.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승인
- ㅇ 운영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사업면적과 상관없이 시에서 사업추진
 - 1. 사업면적 2,000㎡ 초과[촉진지구 지정과 인·허가 통합승인(시)]



2. 사업면적 1,000㎡ 이상 ~ 2,000㎡ 이하[촉진지구지정(시) 인허가(자치구)]



□ 용적률 적용기준

ㅇ 용도지역 변경 있는 경우

용도	기정	자연녹지	제1종	제2종	제3종	제2종 제3종	등 준주거	제2종	제3종	준주거	근린상업
지역	변경	제2	종	준격	두거	근린싱	·업		일빈	<u></u> - 상업	
기본용적	덕률(%)	200)	4(00	540			680		700
공공기0	4 율(%)	30	10	15	10	25 20	10	30	25	20	10
상한용적	덕률(%)	250)	5(00	900			1,	300	
비주거ㅂ	율(%)	_		5~	15			10~2	0		

ㅇ 용도지역 변경 없는 경우

구분	준주거	준공업		근린상업		일반상업		
기본용적률(%)	500	400	600	700	800	800	900	1,000
공공기여율(%)	6	10~15	8	10	12	10	12	14
상한용적률(%)	575~600	400		900		1,300		
비주거비율(%)	5~	15				~20		

ㅇ 용적률 체계 예시



□ 건축계획 수립기준

- 무장애 설계: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, 이동하기 편리하고 생활하기에안전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, 무장애 설계 가이드라인 준수
- 첨단 특화설계 : 스마트기기와 연결한 IoT 서비스, 침실 및 화장실 등 비상벨 [응급구조 자동전송(병원 또는 소방서) 시스템 포함], 동작감지센서 설치



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자문위원회

목 적 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대료 산정등에 대한 자문

ㅇ 구 성 :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인 이하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

- ㅇ 역 할
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산정
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
 - 기존 상가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 보호대책
 - 부설주차장 배분 및 주차요금 징수 등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 -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지원시설 운영방안
 -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 공공기관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추진

사업여건이 불리한 모아타운 지역에 공공기관 참여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 추진

□ 추진배경

- 기 공공관리사업(6개소)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확대 필요
- ㅇ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및 주민과 공동사업 추진으로 사업 투명성 제고

□ 공모개요

- ㅇ (공모대상) 모아타운 대상지 중 공공참여를 원하는 사업지 10개소 내외
- o (지원내용) 관리계획수립(변경), 조합설립,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지원
 - **인센티브** 종상향시 **임대주택비율 완화**(50% → 30%), **시업구역확대**(2만m² → 4만m²) 등
 - 이주대책 지원 강화 종전자산 70%까지 이주비 융자지원
- o (선정방법) 사업계획서, 주민동의율,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 원회에서 최종 선정

※ 공모선정 기준

- ▶ 도시계획 규제(자연경관지구 등) 완화를 통해 **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구역**
- ▶ 종상향 요건 충족하여 **임대주택 비율 완화 적용 가능한 지역**
- ▶ 추진주체 부재 및 갈등으로 주민 주도의 **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**

□ 향후계획

ㅇ 공공관리사업 공모 공고 '24. 6.

o 공모신청 접수 및 사업성검토 등 '24. 7.~ 11.

ㅇ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확정 '24.12.

작 성 자 전략주택공급과장: 최원석 ☎2133-6280 모이주택계획팀장:김지호 ☎8231 담당: 윤진석☎8232

2030 도시 ·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

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, 노후·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

□ 추진근거

o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(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)

□ 사업개요

o 계 획 명: 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)

ㅇ 목표연도 : 2030년

o 계획범위 : 서울시 주거지(약 313km²) ※ 공장비율 10% 미만 준공업지역 포함

ㅇ 계획내용 : 2025 기본계획 진단, 부문별 계획수립 및 실행기준 마련

□ 비전 및 목표

시민모두의 주거안정과 품격있는 삶이 보장되는 주거만족 실현 도시 서울

/¹⁰⁰ 계획목표 <mark>01</mark>

안정적 주택공급

시민 모두가 주거 걱정 없는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

- ❶ 정비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역지정 요건 완화
- ② 노후·과밀 주거지 정비사업 여건 개선
-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체계 구축
- 4 노후·저층 주거지의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(휴먼티운 2.0)

계획목표 02

주거공간 대개조

세계적 도시, 서울에 걸맞은 도시 매력 증진

-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단지 조성
- ② 기반시설 입체복합 통한 효율적·합리적 공간 활용
- **③** 디자인 혁신을 통한 매력 있는 주거공간 조성
- 4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주택단지 조성

□ 추진현황

ㅇ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발표

'24 3 27

o 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(14일간) '24. 5.30.~ 6.13.

□ 향후계획

작성자

ㅇ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'24. 8.

o 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

'24 9

공동주택지원과장: 남정현 ☎2133-7030 재건축정책팀장: 장지광 ☎7136 담당: 박슬기 ☎7137 : 고현정 ☎2133-7190 주거정비정책팀장: 유봉모☎7205 담당: 유태윤 ☎7206 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: 최재준 **☎**2133-7240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: 조성국 **☎**7247 담당: 유성완 **☎**7250

참고자료 기본계획 주요내용

1 **안정적 주택공급** (시민 모두가 주거 걱정 없는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)

- ① 정비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역지정 요건 완화 때빨
 - (주택정비형 재개발 접도율 도로기준 완화) $4m^{\circ}$ 상 $\rightarrow 6m^{\circ}$ 상(도시정비조례 개정 完 '24.5.)
 - (고도·경관지구 기준 완화) **높이규제완화**, 용적률 체계 합리화(도시계획조례 개정예정 '24.7.)
- ② 노후·과밀 주거지 정비사업 여건 개선 제개발 제건축
 - (사업성 보정계수) 지가 등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보정(최대 2배)
 - (현황용적률) '04년 종세분 이전의 과밀지역(단지)의 현황용적률 인정
 - (공공기여 완화) 1단계 종상향시 공공기여율 완화(15%→10%) 및 상한용적률 건축물(임대주택 및 전략 육성용도) 인센티브 계수 조정(0.7→1.0)
 - (역세권 준주거 상향)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기준(방향) 제시
 - (1종일반주거) 용적률 체계 개편(상한·법상 150%→200%)
 - (2종일반주거)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확대(10%→20%)
 - (준공업지역) 정비사업 추진시 법적상한용적률(400%)까지 허용
 - (준주거지역) 용도지역 상향 시 용적률 체계 명확화
- ③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체계 구축 때개발 재건축
 -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(패스트트랙) 도입, 통합심의 본격 추진
- ④ 노후·저층 주거지의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(휴먼타운 2.0) 주·환
 - (양질의 주거환경) 건축기준 완화, 기반시설 확충, 생활환경 개선
 - (지원확대) 전문가 컨설팅, 금융지원, 신축매입임대 약정 확대 등 시업성 개선
 - (뉴:빌리지 사업연계) 국토부 뉴: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

2 주거공간 대개조 (세계적 도시, 서울에 걸맞은 도시 매력 증진)

- 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단지 조성 재개발 재건축
 - (열린단지) 생활공유가로, 담장 없는 단지계획 등 개방형 공간 조성
 - (거주성) 층간소음 방지, 단차 제거(BF) 등 쾌적한 거주공간 조성
- ② 기반시설 입체복합 통한 효율적·합리적 공간 활용 재개발 재건축
 - (입체복합) 도로+공원+주차장, 건축물+녹지축 연계 입체·복합화
 - (재구조화) 정비기반시설, 공공시설 이전·재배치 등
- ③ 디자인 혁신을 통한 매력 있는 주거공간 조성 때개발 재건축 주·환
 - (매력공간) 수변·녹지 연계 및 돌출형 발코니 등 입면 다양화
 - (디자인) 기부채납 설계공모 확대(시→시·구)로 디자인·품질 제고
- ④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주택단지 조성 재개발 재건축 주·환
 - (저출산·초고령화) 돌봄시설.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유도
 - (탄소중립) 제로에너지(ZEB). 장수명주택 건립 등 유도
 - (전략용지) 미래수요 및 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용지 확보

│참고│ 기본계획 관련 보도자료(2O24. 5.3O.(목) 석간) 주요내용

- 보도제목 : 서울시, '정비시업 기본계획' 재정비··· 주택공급·주거만족도 높인다 ○ 주요내용
 - 「2030 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정비··· 30일(목) 주민공람, 9월 고시
 - 사업성 보정계수, 현황용적률 인정 등으로 '사업성 개선'하여 안정적 주택공급
 - 열린단지, 기반시설 입체·복합화 등 통해 주거공간 대개조로 도시매력 극대화
 - 시 "동력 부족한 사업장에 '숨통' 기대··· 주거안정 위해 제도 지속 발굴·손질"

6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 강화

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하여 조합-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

□ 추진배경

- ㅇ 조합-시공자간 '공사비 증액'에 따른 갈등 빈발
- ㅇ 착공지연, 공사중단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급증 및 주택공급 차질

□ 추진현황

- ㅇ 계약 전 입찰지침서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
 - SH공사(공사비 관련), 변호사 등 전문가(계약내용 전반)가 계약 전 독소조항 등 컨설팅
- ㅇ 계약 후 갈등 단계별 맞춤형 공사비 갈등 관리 추진
 - (조기인지) 증액요청 발생 즉시 인지(시공자 → 조합, 자치구, 시 동시 통보)
 ※ 증액요청 발생~변경계약 체결까지 시. 구 주관부서 집중관리대상
 - (갈등발생) 코디네이터 파견, 공사비 검증, 면담, 간담회 등 협의유도
 - (갈등심화)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중재기관(상사중재원) 중재
 - (갈등해소) 준공 시까지 모니터링
- 이 행정지원 서울형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착공 지연, 공사중단 방지
 - 시공사 선정 ~ 입주까지 공사중단·지연 없이 사업 추진토록 기반 마련
- O 행정지원 공사비 검증기관 확대(한국부동산원 + SH공사)로 신속한 공사비 검증
 - ('24년 상반기)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기준 마련 → (하반기) 검증업무 본격 시행

□ 향후계획

- ㅇ 갈등 단계별 맞춤형 공사비 갈등 관리 (계속)
- o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 '24. 6.
 - 조합 표준정관 및 갈등유형별 매뉴얼 마련
- o SH공사 공사비 검증기능 확대

'24.하반기

- 인력확충 등 조직 정비('24년 말까지 점진적 조직 확대)

작 성 자 공동주택지원과장: 남정현 ☎2133-7130 재건축정책팀장: 장지광 ☎7136 담당: 김록원 ☎7137

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 마련

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조합 표준정관 마련 추진

□ 추진근거

- ㅇ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0조(정관의 기재사항)
 - 시도지사는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표준정관을 작성, 보급할 수 있음

□ 추진배경

- o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정관에 대해 서울시 표준(안)을 작성· 보급하여 갈등 예방 및 공공지원 강화 필요
 - 부적절한 조합운영 및 내홍으로 인한 공사비 갈등 및 사업지연 사례 발생

□ 추진방안

○ 우리시 설계자시공자 선정기준 및 표준계약서와 연동 → 정비사업
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표준정관 작성·보급

안정적인 사업추진

- 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 운영조합장·임원의 의무.
 - 직무대행제체 (제4, 5장)
- ▶ 조합장임원 부재 등 **갈등상황 시** 신속한 조합 운영 정상화 지원

공사비 갈등 예방

- 시공자설계자 선정 및 계약 (제3장)
- ▶ 市 선정기준 준수, 표준계약서 활용, 공사비 변경계약 및 검증 등

효율적인 업무 추진

- 정비사업 시행방법・기간
- 조합원의 자격·권리·의무
- 준공, 청산 및 조합 해산 등
 (제1, 2, 6, 7, 9, 10장)
- ▶ 서울시 공공지원 제 규정 준수, 전자투표 활성화 등

□ 추진현황

○ 표준정관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(2회) 및 법률검토 '24. 4.~ 5.

□ 향후계획

ㅇ 표준정관 고시(안) 행정예고

'24. 6.

작 성 자 주거정비과장: 고현정 ☎2133-7190 공공지원실행팀장: 정재현 ☎7201 담당: 한희진 ☎7208

정관의 기재사항(법 제40조, 시행령 제38조, 조례 제22조)

정비사업 시행 및 조합원에 관한 일반사항

- 조합의 명칭, 사무소 소재지
- 조합원의 자격, 권리·의무, 제명•탈퇴 및 교체
- 정관의 변경절차
-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, 종류 및 명칭
-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 방법,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
- 조합임원 수, 업무범위, 권리 • 의무•보수•선임방법•변경 및 해임, 임기, 업무분담 및 대행
- 조합직원의 채용, 상근임원의 지정 및 보수
-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
- 청산절차 및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, 청산금의 징수
 지급의 방법 및 절차
-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
-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
-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과한 사항
-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
-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
- 단독→다세대주택 전환한 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
-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
- 정비구역 내 공가 발생 시 안전조치 및 보고 사항

조합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

- 총회의 소집 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,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, 총회 의결사항
-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일정
- 대의원 수, 선임방법, 선임 절차 및 대의원회 의결방법, 대의원회의 기능, 의결권 행사 방법 등
-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, 사무, 의결방법 등
- 공고·공람 및 통지의 방법
-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

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,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
-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
-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 요건에 관한 사항
-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
-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
-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(변경)에 관한 사항
-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
-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
-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지연 시 이자 지급

8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및 관리기준 개선

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규제완화, 양질의 후보지 선정, 갈등관리 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후보지 선정 및 관리기준 개선

□ 추진배경

- o 입안요청제 신설, 사업요건 및 동의요건 완화 등 정책변경 반영
- o 사업혼재지 반복재추천. 지분쪼개기 방지 등 선정 및 관리기준 정비

□ 추진내용

- ① 후보지 선정 입안요청제 반영 후보지 선정 절차 정비
 - (정량평가 개선) 노후도 완화기준 등 반영, 찬성동의율·반대동의율 가·감점 강화
 - (사전검토 강화) 혼재구역 주민신청시 사업방식 등 자치구청장 면밀한 검토 추천 주민신청구역 번호부여 전 구역계, 접도요건 등 검토기능 강화
- ② **입안요청 동의서** 주민편의·사업신속추진 위해 동의서 재사용 허용 기준 신설
 - (현 행) 주민의견 반영, 재상정 남발 방지를 위해 신청시마다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 재징구
 - (개 선) 추진주체, 구역계 등 여건변동이 없고 기 동의율 50%이상인 경우에 한해 구청장 판단하에 재사용 허용
- ③ **투기방지대책** 투기발생구역 후보지 추천·선정 원천 배제
 - (현 행) 후보지 선정 후 권리산정기준일 + 건축허가제한 +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 - (개 선) 자치구청장 사전검토 강화 및 지분쪼개기 등 투기발생구역 후보지 추찬선정 제외
- ④ **사전타당성조사** 규제완화정책 등 고려 사전타당성조사추진 동의요건 완화
 - (현 행) 개략계획에 대한 동의 2/3이상, 반대1/4미만
 - (개 선) 동의 60%이상, 반대1/4미만

□ 향후계획

ㅇ 선정 및 관리기준 안내 및 선정위 심의 추진

'24. 6.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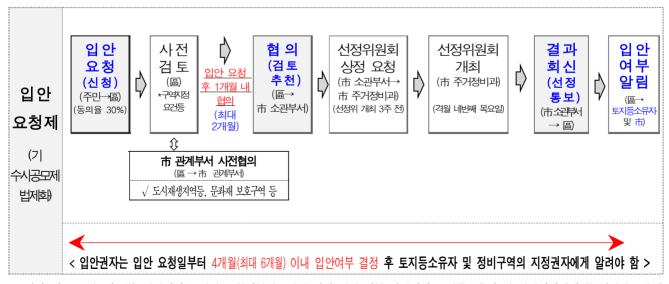
작 성 자 주거정비과장: 고현정 ☎2133-7190 주거정비지원팀장: 이재훈☎7198 담당: 윤지원 ☎7200

참고자료 입안요청제 절차

□ 추진개요

- o (기 간) 입안요청 협의 및 회신기한 반영 1)
 - (협 의) 주민 입안요청 후 1개월(최대 2개월) 내 협의(區→市)
 - (회 신) 입안요청 후 4개월(최대 6개월) 내 입안여부 결정 알림(區→주민,市)
- o (동의율) 30% 이상 주민동의시 신청 (현행 동일)
- ㅇ (서 식) 개정 조례 시행규칙 서식 반영
 - 입안요청서, 구역계, 토지등소유자명부, 건축물현황, 동의서
 - 반대동의서, 철회서, 대표자선임동의서, 개인정보 등 수시선정 양식 별도
- o (선정위) 추천구역의 면밀한 검토 등 행정의 효율성 고려 격월 개최
 - 격월 넷째 목요일 개최
- ※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- ※ 목표 물량 '24년 3만호(약25곳) 내외 후보지 선정 (*26년까지 약 14만호 구역지정 목표)

【 입안요청 (후보지 선정) 절차¹⁾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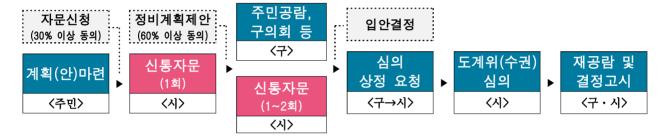
- ※ (법 제13조의2제2항) 입안권자는 입안 요청일부터 <u>4개월 이내 입안 여부 결정</u>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지정권자에게 통보<u>(최대 6개월)</u>
- ※ (영 제11조의2제3항) 입안권자는 입안 여부 결정 전에 <u>지정권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</u>

9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자문 활성화

신속통합자문과 정비계획 입안절차 동시 추진 등 절차 간소화 (Fast-Track)로 사업기간 단축 및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

□ 추진현황

- o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(시장방침 제54호, '21.9.30.)
-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(Fast-Track) 개선계획 (2부시장방침 제261호, '23.10.18.)
 - [기존] 신통기획 완료 후 입안절차 추진 → [개선]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 병행 추진 ※ 추진절차(개선)



□ 추진실적('24.5.30.기준)

- 신속통합자문사업(Fast-Track) 개선으로 자문접수(귀)부터 상정(세)까지 평균 4.2개월 단축
 - '24.5.20 이후부터 공공건축가(MP)자문 탄력 운영으로 **평균 3.2개월 추가 단축 전망** ※ 총 45개소 추진중(신통기획 진행 2건, 정비구역 지정 추진 39건, 구역지정 완료 4건)

	합 계	시트기하			구역지정				
구 분	(45)	신통기획 진행(2)	소계	계획수립	부서협의	주민공람	구의회 의견청취	도계위 심의	완료(4)
	19	2	13	3	4	1	2	3	4
기획사업		서빙고신동아 장미1·2·3차		압구정3, 5 서초진흥	송파한양2차 경우현, 압구정 2, 4	고덕현대	대치미도 목동6	여의도시범 미아4-1 신반포2차	우신빌라, 신향빌라 여의도한양, 상계5
	26	_	26	19	3	2	1	1	
자문사업				삼부,목화,광장 목동5, 목동7~10 목당2~13,산월사명 상제,불당마성, 금강하는 광장극동, 산동아차자 명안(동아, 울림팩웨마리 샤환(도본,반편)도2차	창동상아1차 구로우성, 쌍문한영1차,	목동4, 목동14	여의도대교	라실5	

□ 향후계획

o 신속통합 대상지의 신속한(12개월 내외) "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"

작 성 자 공동주택지원과장: 남정현 ☎2133-7130 재건축계획팀장: 이기택 ☎7140 담당: 공경배 ☎7141

참고자료 신통기획 자문사업(Fast-Track) 개선효과(소요기간 단축)

연	번	자치구	단지명	위치	구역면적 (m²)	계획 세대수	구 접수 (주민→구)	자문신청 (구→시)		기간 네:월) 평균
				2,0)00세대 ㅁ	미만				
패	1	영등포구	여의도 삼부	여의도동 30-2	62,635	1,658	23-02-17	23-12-08	9.7	
스트트	2	영등포구	여의도 대교	여의도동 41	33,418	924	23-03-30	23-07-03	3.1	
	3	영등포구	여의도 목화	여의도동 30	11,570	393	23-04-10	23-08-30	4.7	5.1
랙	4	영등포구	여의도 광장	여의도동 28	43,042	1,020	23-06-01	23-09-20	3.7	
전	5	양천구	목동8단지	신정동 314	88,599	1,716	23-07-06	23-11-24	4.6	
	6	도봉구	창동상아1차	창동 299	24,145	990	23-10-24	23-11-29	1.2	
패	7	구로구	구로우성	구로동 23,24	16,814	488	23-10-30	23-12-27	1.9	
[-	8	도봉구	쌍문한양1차	쌍문동 388-33	43,499	1,160	23-11-30	24-01-16	1.5	
스트트랙	9	종로구	금강 하이츠빌라	평창동 64-3	16,697	299	23-12-22	23-12-28	0.2	1.2
	10	도봉구	삼환도봉	도봉동 87	28,616	855	24-01-19	24-04-15	2.9	
후	11	광진구	광장극동	광장동 218-1	76,364	1,990	24-01-24	24-01-30	0.2	
	12	강동구	명일 신동아	명일동 44	39,559	856	24-03-04	24-03-18	0.5	
패스트트랙 전ㆍ후 평균 단축기간										
				2,0	00세대 (기상				
	1	양천구	목동 14단지	신정동 329	250,722	5,581	23-04-28	23-11-10	6.4	
패	2	양천구	목동13단지	신정동 327	178,920	3,878	23-05-03	23-11-16	6.5	
시티티	3	송파구	잠실5단지	잠실동 27	358,077	6,383	23-05-25	23-08-17	2.8	
	4	양천구	목동 12단지	신정동 326	127,340	2,845	23-05-26	23-11-10	5.5	5.4
랙 	5	양천구	목동7단지	목동 925	229,579	4,339	23-06-29	23-11-23	4.8	
전	6	양천구	목동10단지	신정동 311	194,686	4,129	23-06-30	24-01-31	7.1	
	7	양천구	신월시영	신월동 987-1	146,351	3,135	23-07-10	23-12-06	4.9	
	8	양천구	목동5단지	묵동 913-4	70,485	3,765	23-10-19	23-11-23	1.2	
패	9	은평구	불광미성	불광동 248	60,720	2,141	23-10-26	23-11-30	1.2	
취	10	양천구	목동4단지	목동 904	101,515	2,446	23-10-30	23-11-23	8.0	
스트트	11	노원구	상계주공6	상계720	103,491	3,542	23-11-15	23-11-22	0.2	0.9
랙	12	도봉구	신동아1차	방학동 272	139,037	4,048	23-12-18	24-02-16	2.0	
후	13	양천구	목동9단지	신정동 312	158,115	3,735	23-12-27	24-01-31	1.2	
	14	송파구	올림픽 훼미리타운	문정동150	361,212	6,665	24-03-25	24-03-28	0.1	
			패스	트트랙 전ㆍ후	- 평균 단	축기간			4.	.5

1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(변경안) 시행

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 취지 불구,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, 우리 시 개정 건의 등을 반영하여 법령 개정

□ 추진현황

ㅇ 법률 개정 건의(서울시→국토교통부)

'23.11.13.

ㅇ 법률 개정안 공포

'23.12.26.

ㅇ 시행령·시행규칙 입법예고

'24. 2. 2.~ 2.29.

ㅇ 법·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시행

'24, 3,27,

□ 주요 완화 내용

- o 면제금액 상향(3천만원 → 8천만원)
- o 부과구간 단위 확대(2천만원 → 5천만원)
- o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경(10% ~ 70%)
- o 부과개시시점 변경(추진위 승인일 → 조합설립인가일)
- 공공임대 등 공공기여 토지 산정기준 변경(공시지가 → 감정평가액)
- ㅇ 부과 종료시점에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 가능
- ㅇ 신탁보수 등 각종 비용 개발비용에 포함

부과율	면제	10%	20%	30%	40%	50%	
개정 전	0.3억 이하	0.3~0.5억	0.5~0.7억	0.7~0.9억	0.9~1.1억	1.1억	
			초과				
개정 후	0.8억	0.8~1.3억	1.3~1.8억	1.8~2.3억	2.3~2.8억	2.8억	
	이하		초과				

구분		장기보유 기간별 감면율								
개정 후	보유기간	20년 이상	15년 이상	10년 이상	9년 이상	8년 이상	7년 이상	6년 이상		
	감면율	70%	60%	50%	40%	30%	20%	10%		

작 성 자 공동주택지원과장 : 남정현 ☎2133-7130 재건축정책팀장 : 장지광 ☎7136 담당 : 이종학 ☎7145

□ 개정에 따른 부담금 감소액(예상)

(단위 : 천원)

구	분	단지	기존 부과예정 총액	개정 부과예정 총액	비고
감	액	33	2,528,832,487	2,011,914,663	20.44% 감액
면	제	7	3,278,417	-	
합	계	40	2,532,110,904	2,011,914,663	20.54% 감액

※ 현재 정확한 감면율 추정 불가

-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경 : 개인정보로서 열람 불가

- 기부채납 토지 감정평가액 : 감정평가 필요

- 신탁보수 등 각종 비용 : 사업장별로 내역서 제출 필요

- 개시시점(추진위 → 조합) : 감정평가 업체에서 금액 재산정

□ 부담금 부과 대상('24. 8월까지)

(단위 : 천원)

자치구	단지명	준공인가일	총 부담금(예정)	비고
은평구	연희빌라(79세대)	2021-05-20	*면제	
서초구	반포현대(80세대)	2021-07-30	6,455,200	
강서구	화곡1(단독)(630세대)	2022-12-01	1,993,167	특례 적용 (부과 연기)
광진구	자양아파트(125세대)	2023-02-27	면제	
강남구	역삼아트빌라(27세대)	2023-08-31	1,860,284	
			10,308,651	

^{*}부담금 예정액은 최초 산정(시업시행인가 고시 후 4개월 시점)이며,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실 부과액은 증가될 가능성 높음

□ 부담금 귀속 및 활용

구 분	귀속분	회계	부담금의 활용	비고
국가 (국토교통부)	50%	주택도시기금	지방자치단체 지원	
서울시	30%	주택사업특별회계	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따름	
자치구	20%	자치구 재건축사업특별회계	자치구 조례에 따름	

□ 향후계획

ㅇ 변경된 법률안에 따라 부과 • 징수 실시 [자치구 위임]

11 중산시범·회현시민APT 개발 추진 및 활성화

중산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토지(시유재산) 매각 추진 및 회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및 도심 관광 활성화 추진

① 중산시범 APT 개발 추진 현황

□ 사업개요

- ㅇ 시유재산인 시범아파트 부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재건축 추진
 - '70년 분양 당시 지적 미확정으로 건축물만 분양하고 부지는 미분양
- ㅇ 대상지 현황

위치	토지면적	건폐율	용적률	층수	동수	세대수	등급
이촌동 211-2 일대 (6개 필지)	4,695.5 m²	32.7%	228%	7층 (20m)	6개동	266세대	D등급 ('07)

※ 지역·지구 :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(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)

- 현장사진 및 위치도



※ 중산시범아파트 부지는 6개 필지로, 각 필지 지상에 각 1개동 건물이 위치

□ 추진현황

ㅇ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

'22.12.

ㅇ 대부신청서 접수 및 대부료 부과(용산구)

'23. 5.~

- '24.5.20.기준 총 266세대 대비 매수신청 254(95.4%) / 대부료 납부 247(92.8%)
- o 감정평가 의뢰 (용산구→감정평가업체)

'24. 4.

□ 향후계획

작성자

ㅇ 감정평가 완료

'24. 6.

ㅇ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상정 (매각가격 결정)

'24. 7.

ㅇ 토지 매매계약 추진

'24. 8.~

공동주택지원과장: 남정현 ☎2133-7130 재건축정책팀장: 장지광 ☎7136 담당: 김록원 ☎7138

재건축계획팀장: 이기택☎7140 담당: 정희종 ☎7139

②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추진현황

□ 사업개요

ㅇ 대상지 현황

위 치	부지면적(m²)	건물현황	세대	안전등급	준공
중구 회현동 147-23	3,964.7(시유지)	1개동, 지상10층	352	D급('04)	'70. 5

※ 지역·지구 :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(특별계획구역)

ㅇ 사업내용 : 잔여세대 협의 매입 및 철거 후,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

- 협의·보상 및 철거 : SH공사 대행 / 도시계획시설 사업 : SH공사 시행(계획)

o 이주현황 : 총 352세대 중 325세대 보상·계약 완료, 잔여 27세대

□ 추진현황

o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재추진

'22 8 ~

- '05.~'16. 협의매입 추진 → '16.~'21. 리모델링 사업 전환 → '22.~ 재추진
- o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및 공원) 결정 추진 ※ 용역계약 '23.12. '23.10.
 - 도입기능(안)

지역현안 해결

- ▶ 재난위험시설 해소
- ▶ 남산 일대 주차장 부족 해결

입지적 잠재력 활용

▶ 도심 · 남산 경관 조망명소

▶ 가족 · 문화 관광컨텐츠

관광버스 주차장 및 同行 문화공간(남산라운지) 조성

- ▶도심 관광버스 및 일반차량 주차장 설치
- ▶ 남산·도심 전망공원, 북파크, 키즈카페 등 다목적 공간 조성
- 시설계획(안): 연면적 13,336㎡, 지하2 / 4층, 높이 24m (4층 전망대/3층 문화공간/2~지1층 버스 23대, 지2층 일반 50대)



□ 향후계획

o 지구단위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열람, 심의 및 고시) '24. 6.~ 8.

o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기본 및 실시설계) '24. 8.~ '25. 8.

o 잔여세대 이주 완료 및 공사착공 ※ 준공(예상) '28.12. '26. 5.

12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추진

토지매입 어려움에 따른 사업 장기화,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의 부적정 업무 추진 등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. 관리방안 추진

□ 추진근거

o 「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」 ※ 서울시장 방침 제32호('24.5.20.)

□ 추진방향

- ㅇ 신규 사업지 최소화, 추진곤란 사업지는 점진적으로 정리 추진
- ㅇ 실태조사, 공공변호사 입회 등 강도 높고 체계적 관리 추진
- ㅇ『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』설치 등 조합원 권리보호

기존 사업지 관리 강화

- **(정상추진**) '신속한 검토 · 협의' 등 행정지원
- (추진곤란) 일몰기한 경과지역 **지진해산 유도 外**
 - 해산총회 가이드라인 작성·배포
 - 청산지원반 및 코디네어터 파견 준비

공공의 역할 강화

-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**실태조사** 실시
- 총회 시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신설
- 서울형 표준규약, 표준가입계약서 및 토지사
 용권원 동의서 표준양식 배포

신규 진입장벽 강화

- 先 도시계획 결정, 後 모집신고 처리
- 정보공개 등 주택법령 준수 시, 도시계획 진행
- 모집신고 · 조합설립인가 시, 국 · 공유지 사용권원 부동의 간주

조합원 알 권리 보장

- 조합원 피해상담 · 지원을 위한 「지역주택
 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」신설
- 지역주택조합 관련 **주요정보**를 시·구 홈페이 지 등에 **상시공개**

□ 향후계획

ㅇ '24년 상반기 실태조사

'24. 6.~ 7.

ㅇ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, 세부내용 수립·시행

'24. 6.~

o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설치·운영

'24.하반기

작 성 자 | 공공주택과장: 신동권 ☎2133-7050 역세권주택팀장: 곽명희 ☎7080 담당:김진균 ☎7865

13 2024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실시

지역주택조합의 예산 수립·집행, 업체선정, 정보공개 적정성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 피해예방과 투명한 사업추진 도모

□ 추진방향

- ㅇ 조사기간 연장 및 참여 전문가 인력 보강으로 강도 높은 조사 실시
- ㅇ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

□ 추진개요

- 조사기간 : '24. 6. 10. ~ 7. 11. ※ 조합 1곳당 7일간 조사
- ㅇ 조사대상 : 지역주택조합 7곳
 - ※ 허위·과장 광고 등 잦은 민원 발생, 토지매입 비율이 현저히 낮은 조합 등 선정
- o 조사방법 : 시·구·전문가 조사반 구성 후 점검 매뉴얼에 따라 조사
 - 시·구·전문가(변호사·회계사·MP) 포함 조사반 구성(7~9명)
 - ※ 민생사법경찰단과 협업하여 주택공급 교란 행위 검토
- ㅇ 조사내용 :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추진 단계별·분야별 집중 조사
 - (모집신고) 모집광고·홍보, 조합 가입 시 설명, 가입비 반환 등 적정성 등
 - (조 합) 토지사용권원·소유권 확보 비율, 총회개최 등 적정성 등
 - (업무대행) 업무 대행 자격 적정여부, 업무대행 범위
 - (정보공개) 실적보고서, 자금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공개 적정성 등
 - (회 계) 자금관리·관련 규정 준수, 증빙서류 보관 적정성, 회계감사 실시 등

□ 향후계획

- o 관련법령 위반사항 행정조치 및 자치구·조합 홈페이지 공개 '24. 8.
- o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'24년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추진 '24. 下

작 성 자 공공주택과장: 신동권 ☎2133-7050 역세권주택팀장: 곽명희 ☎7080 담당: 천보현 ☎7059

14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추진

민간건축물 공사 감리 용역비를 공공예치 후 감리업체에 직접 지급하여 건축주로부터 감리의 독립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 유도

□ 사업개요

- ㅇ 추진배경
 - 반복되는 부실공사에 대응하여 「부실공사 Zero 서울」발표('23.11.)
 - 이윤 추구를 우선시 하는 민간 건축공사장 건축주로부터 감리의 독립성 확보
- ㅇ 사업대상 : 허가권자 지정 감리 및 건축심의 대상 중 (책임)상주감리 공사
- ㅇ 추진방법 : 허가권자~건축주~감리자간 3자 협약 체결하여 운영
 - 허가권자 지정 감리 : 감리자 지정통보 시 감리비 공공예치 안내
 - 건축심의 대상 : 사업주체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건축심의 시 조건 부여
- ㅇ 추진절차 :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사전예치 준용



□ 추진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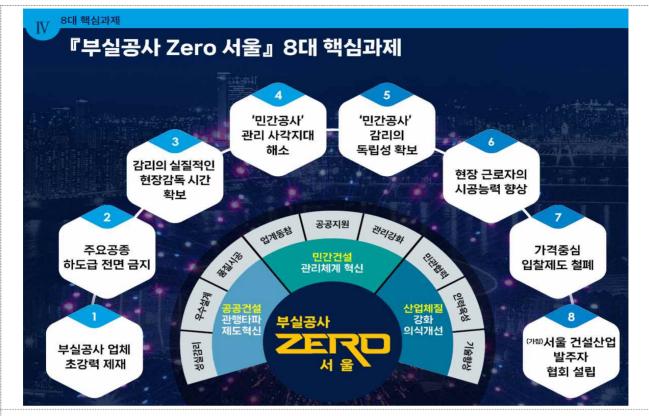
- o「부실공사 Zero 서울」추진계획 수립(시장 방침) '23.11.24.
- ㅇ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추진계획 수립 '24. 5. 1.
- ㅇ 법령 개정 건의(서울시→국토교통부) '24. 5.13.
 - 허가권자 지정 (책임)상주 감리 대상 현장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
- ㅇ 시 허가 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 참여 결정(2개소) '24. 5.17.
- o 자치구 대상 설명회 개최 '24. 5.23.
- o 시 허가 공사장 3자 협약식 개최 '24. 6. 3.

□ 향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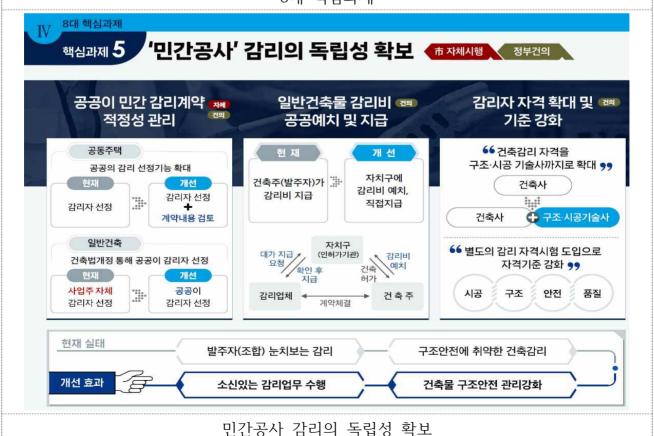
ㅇ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전면 시행(서울시+자치구) '24. 7. 1.

작 성 자 건축기획과장: 임우진 ☎2133-7090 민간건축기술팀장: 임동수☎7273 담당: 김민지 ☎7119

참고자료 「부실공사 Zero 서울」주요 과제



8대 핵심과제



15 풍수해 대비 민간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

집중호우, 강풍 등 풍수해 대비 민간건축공사장, D·E급 주택사면 및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및 유사시 신속대응 추진

※ 풍수해 대책기간 : '24. 5. 15. ~ 10. 15. (5개월)

□ 사전 안전점검

o 점검기간: (1차) 호우대비 5.16.~6.21, (2차) 태풍대비 7.5.~9.13.

o 점검대상: 공사장 4.815개소, 주택사면(D.E급) 62개소, 건축물(D.E급) 115동

	민간공사장(개소)						·면(개소)	건축	·물(동)
대형(연면적 1만㎡ 이상) 중·소형				중·소형		(D·	Ξ급)	(D·	E급)
소계	건축허가	정비사업	소계	중형	소형	D급	E급	D급	E급
313	160	153	4,502	1,496	3,006	58	4	90	25

o 점검방법: 시·구 공무원 및 市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

ㅇ 점검내용

- (공사장) 굴토, 해체, 골조, 크레인, 가시설 등 위험공종 풍수해 안전대책 적정성
- (사면/건축물) 석축·옹벽 균열/배부름 여부, 주요구조부 및 결함부 위험요인

ㅇ 후속조치

- (공사장) 중대한 사항은 공사중지, 개선 후 공사재개,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
- (사면/건축물) 긴급한 사항은 사용제한, 소유자 안전조치 명령 및 지속 순찰

□ 수시 안전점검

o 점검시기 : 호우 및 태풍 특보(예비특보 포함) 발령시

ㅇ 점검방법 : 공사관계자, 건축물 안전관리책임자 및 자치구 합동점검

o 점검내용 : 호우, 강풍 취약부분 점검 (토사유출, 가시설 결박상태 등)

ㅇ 비상대응 : 풍수해 단계별 비상근무 유지 및 복구장비 비상연락망 구축

- 사고발생시 시ㆍ구 건축안전센터에서 전문가 파견 등 초기대응 신속지원

□ 향후계획

작성자

o 1차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('24.6.~7.), 2차 안전점검 실시('24.7.~9.)

지역건축안전센터: 박기철 🚾2133-6980 건축물안전관리팀장: 김문근 🚾6986 담당: 최진우 🕿6987 공사장안전관리팀장: 강진호 🕿6991 담당: 오민택 🕿6997

<u> 안전점검팀장</u> : 김용만 ☎6994 담당: 김양훈 ☎6989

16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

민간건설현장 부실공사 근절,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확대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 관련 기록물 보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제도정착 추진

□ 사업개요

- ㅇ 사업근거 : 서울형 건설혁신「부실공사 Zero 서울」추진 계획
- o 사업기간: '24. 7. ~ '25. 12. (18개월)
- o 사업내용: 기존 건축안전관리시스템에 '동영상 기록관리' 기능 추가
 - ※ 건축안전관리시스템: 민간공사장 및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
- o 소요예산 : 229백만원 ('24년 추경)
 - 시스템 기능 개선 (150백만원) / 상용 S/W 구입 (79백만원)

□ 추진방안

- ㅇ 가용자원을 활용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기 오픈
 - 1단계('24.9.~'25.3.): 데이터센터 가상서버 및 유휴 저장공간(30TB) 활용 구축
 - ※ 정보화사업 사전절차를 거쳐 '25.3월 시스템 오픈
 - 2단계('25.6.~'25.12.): 물리서버로 교체 및 저장공간 확대
 - ※ 물리서버 구축 및 저장공간 (300TB) 확보예산 : 4억('25년(300TB)본예산 편성)
- o '25년 시범운영 후 보완·개선을 통해 본격적 운영 추진
 -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부터 시범운영 ('25.4.~'25.12.)

□ 향후계획

- o **행안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** (추경확정 후) '24. 7.~ 8.
- o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(과업 심의·제안서 평가 등) '24. 8.~ 9.
- o 사업 발주 (경쟁입찰 후 업체 선정) '24. 9.

17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마련

존치관리구역내 원활한 촉진사업 추진 및 촉진지구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마련

□ 구역개요

- ㅇ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은 약 29%(6,2㎞)
 - 31개 재정비촉진지구 중 28개 지구내 총 114개 존치관리구역
 - 존치관리구역내 사업 추진시 지원 및 관리방안 필요
 - 신속한 절차를 위한 '소규모정비사업'이 '촉진계획'수립 대상
 - •기반시설 계획 등 인접 구역과의 연계가 필요

□ 추진방안

- o (지구제척) 촉진지구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척을 원칙
 - 역세권 활성화 사업, 청년 안심주택 추진 지역
 - 모아타운,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(예정) 지역 ex) '중화재정비촉진지구 지구제척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(2023)'
- o (지구제척+인접지역지단 편입) 인접지역 관리수단 활용
 - 역세권 등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활용, 지구제척후 지단구역 편입
- o (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) 관리가 필요한 존치구역의 관리수단 마련
 - 역세권을 제외한 지역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ex) '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(2023)'

<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정책 수립 용역 >

- · 기간 / 수행 : 2023. 5. ~ 2024. 5. (197백만원) / ㈜리얼플랜
- 내 용 :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관리방안 마련 등

□ 향후계획

ㅇ 존치관리구역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

'24.하반기

② 매력美 넘치는 도시·주거공간 조성

- 1. 휴먼타운 2.0(서울형 뉴:빌리지) 사업 추진
- 2. 제42회 서울시 건축상 및 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
- 3.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정비
- 4. 한옥등록 지원제도 홍보 및 서울한옥 브랜드 개발
- 5.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발굴 지원
- 6.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전문가자문단 운영

| 휴먼타운 2.0(서울형 뉴:빌리지) 사업 추진

우리 시 "휴먼타운 2.0" 사업을 정부의 "뉴:빌리지"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계획 수립, 사업설명회 개최 등 추진

□ 사업개요

- o 사업대상: 단독·다가구·다세대가 밀집한 노후·불량 저층 주거지역
 - 재개발·재건축이 어려운 1종주거, 고도·경관지구,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
 -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, 도시재생활성화지역,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등
- o 사업내용: 소형주택 신축·리모델링 촉진 + 마을관리사무소(모아센터) 설치
 -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 촉진
 - 마을관리사무소(모아센터) 설치로 아파트단지에 준하는 마을관리 서비스 제공
 - 도로, 공원,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

□ 추진현황

- o 휴먼타운 2.0 시범사업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'24. 5. 3.
 - 종로구 신영동, 중랑구 망우동, 구로구 구로동
- ㅇ 자치구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
- ㅇ 소형주택 건축관계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
- ㅇ 시범사업 대상 지역 주민설명회 개최

- '24. 5. 7.
 - '24. 5.20.
 - '24. 6. 3.~10.





〈자치구 공무원 설명회〉 〈소형주택 건축관계자 설명회〉 〈시범사업 주민 설명회〉



□ 향후계획

- ㅇ 국토부 뉴ː빌리지 가이드라인 관련 우리 시 의견 적극 반영 '24. 6.
- ㅇ 휴먼타운 2.0 사업 확대(30개소) 및 뉴:빌리지 사업 공모 참여 '24. 9.

작 성 자 주거환경개선과장:최재준 ☎2133-7240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:조성국 ☎7247 담당:유채희 ☎7248

2 제42회 서울시 건축상 및 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

서울의 우수 건축물을 널리 알리고 세계 도시·건축 문화의 플랫폼이 될 제42회 서울시 건축상과 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준비

□ 제42회 서울시 건축상

- o 기간/장소: '24, 10, / 서울도시건축전시관
- o 총 감 독 : 김 호 민 (폴리머건축사사무소 대표/ EBS 건축탐구 '집' 프레젠터)
- ㅇ 추진방향
 - 건축상 심사과정을 공개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축제화
 - 건축상 수상작을 2024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 주요 전시 콘텐츠로 기획하여 건축가의 설계 의도 구현과정과 건축주 및 사용자 경험 적극 공유
- ㅇ 행사내용 : 건축상 시상, 전시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
 - 건축상 시상규모 : 대상 1작, 최우수상 2작, 우수상 6작, 특별상 3작 이상
- ㅇ 추진현황 : 공모(5.16.~6.18.)
- o 향후계획: 서류심사(6.26.), 현장심사(7.1.), 공개 프레젠테이션(7.24.)
 - ※ 수상후보작에 대한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수상작 선정

□ 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

- ㅇ 기 간: '25. 9. ~ 10.(예정)
- ㅇ 주 제 : 'Humanise'보다 즐겁고,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, 인간적인 도시건축
- o 총 감 독 : 토마스 헤더윅 (Thomas Heatherwick, 헤더윅 스튜디오 대표)
- ㅇ 추진현황 : 총감독 후보 논의 및 협의('23.11.~'24.3.), 운영위원회
 -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 선임 동의(3.11.), 위촉(6.3.)
- ㅇ 향후계획
 - 참여작가 공모 및 초청 모집, 전시 구상 등('24.7.~12.)
 - 제5회 2025 서울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('24.12.)

작 성 자 건축기획과장: 임우진 ☎2133-7090 도시건축교류팀장: 박경선 ☎7632 담당: 채리나/송유빈 ☎7615

참고자료 제5회 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프로필



ㅇ성 명: 토마스 헤더윅(Thomas Heatherwick)

ㅇ출 생: 1970년 / 영국

ㅇ상 훈: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 (2013)

【 주요이력 】

- 헤더윅 스튜디오 창립 (1994년)
- 최연소 왕립산업디자이너 선임 (2004년)
-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(CBE) 서훈 (2013년)
- 영국 왕립 아카데미 공과대학 명예연구원 (2016년~현재)

【 수상 경력 】

- 런던 디자인 메달 수상 (2010년)
- 영국 왕립건축가협회 루베트킨상 수상 (2010년)
- 이탈리아 황금 콤파스(Compasso d'Oro) 수상 (2014년)
- 미국 학술 공로상 수상 (2019년)

【 주요작품 / 전시】

- 전시 〈헤더윅 스튜디오: 감성을 빚다〉 개최 / 서울 (2023년)
- 아자부다이 힐스 Azabudai Hills / 도쿄 (2023년)
- 구글 신사옥 Google HQ / 실리콘밸리 (2022년)
- 리틀 아일랜드 Little Island / 뉴욕 (2021년)
- 베슬 Vessel / 뉴욕 (2019년)
- 난양공대 러닝 허브 Learning Hub / 싱가포르 (2015년)
- 상하이 엑스포 영국관 / 상하이 (2010년)



<**구글 신시옥**(2022), 실리콘밸리>



<리틀아일랜드(2021), 뉴욕>



<베슬(2019), 뉴욕>



<노들 글로벌 예술섬 당선작(2024), 서울>

3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정비

건축법에 따라 지정한 45개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구역(지정구역) 및 산정구역에 대하여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한 재정비 추진

□ 사업개요

ㅇ 추진근거 : 건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, 서울시 건축조례 제33조

ㅇ 사 업 명 :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정비(3차)

ㅇ 용역기간 : '22. 11. 29. ~ '24. 2. 28.

- 용역비 : 371,250천원(1차 192,000천원, 2차 179,250천원)

- 용역사 : ㈜도시디자인공장+고도플루토도시계획건축사사무소(주)

ㅇ 용역대상 :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(45개 지정구역 및 산정구역)

□ 재정비 목적

- o (지정구역) 기존 높이기준에 대한 제도·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종합 재정비
 - 기존 높이기준 수립 후 10~20년이 경과한바,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재정비
- o (산정구역) 전면도로 너비에 따라 산식(舊사선제한)으로 높이를 산정하는 구역 (준주거·상업·준공업)에 대해 순차적으로 높이 지정
 - 산정구역(상업·준공업·준주거지역)의 단계적 높이지정 우선순위 설정
- ㅇ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운영지침 재정비
 - 용적률 달성과 공공성 달성을 위한 높이완화 인센티브 재정비

□ 주요 재정비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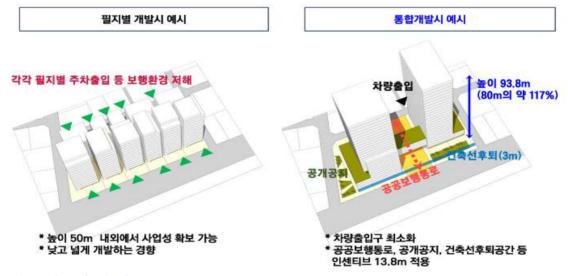
【4·5차 재정비 기준(안)】

- ① 노선상업지역 등 집중관리 필요한 대지면적이 큰 구역부터 우선 재정비, 재정비 시 각 구역 별 육성목표와 통합구상 포함
- ② 간선구역 기준높이 현실화, 높이완화 인센티브(저층부 보행활성화, 개방형 공지 등) 활용을 통한 건축계획 유도토록 변경

작 성 자 건축기획과장: 임우진 ☎2133-7090 민간건축기술팀장: 최용대 ☎7111 담당: 진수희 ☎7112

【운영지침 재정비】

- ① 실질적 높이 관리 필요성이 적은 가로구역 대폭 해제
 - 이면구역 주거지역 150㎡ 미만 대지 높이기준 적용 제외
 -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구역 및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은 관련 법에 따른 높이완화를 적용토록 명시, 혼선 방지
 - 주거지역 연접구역 해제를 통한 높이 완화
- ② 도시경관 조성 및 가로활성화 유도항목(저층·고층부 건폐율, 공공보행통로 등)에 대한 가중치 부여로 인센티브 확대 및 항목 간소화
- ③ 최고높이 완화 활성화
 - 위원회 반영 용이토록 산식화 및 민간제안 특별높이운영구역 활성화
 - 공동 건축을 통한 적정 대지규모 개발 유도



【산정구역 재정비】

- ① 노선상업지역 등 관리 필요성이 큰 상업지역 우선 단계적 지정구역화, 그 외 준공업·준주거지역(산정구역)은 5차 재정비 완료 후 해제 검토
 - ※ 남부터미널 일대 ·장한로(기존 산정구역)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

□ 향후계획

- ㅇ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 시행지침 변경공고 및 지정구역 고시 '24. 6.20.
- O 시행지침 가이드라인 및 Q&A 제작 및 배포 '24. 6.21.

참고자료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정비 현황

□ 관련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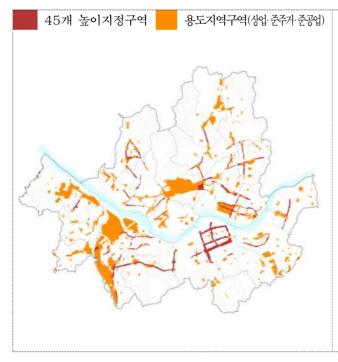
- ㅇ「건축법」제60조(건축물의 높이 제한)
- o「건축법 시행령」제82조(건축물의 높이 제한)
- o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제33조(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)

□ 구역지정 현황

ㅇ 높이지정 범위 : 총 68.96㎢

- 지정구역 : 45개소 면적 13.46km - 산정구역 : 용도지역 면적 55.5km

- ※ '15년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라, ①도로 개방감 확보하기 어렵고 도로결빙으로 인한 안전 문제발생우려, ②재난 및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소방 및 구조 활동 장애 우려, ③주변 환 경을 고려하지 않은 돌출 고층개발 제어에 한계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<u>상업·준주거·준공</u> 업지역 도로넓이에 따라 높이 산정 적용 지역으로 일괄공고
- 1차('15.8.)/2차('19.7) : 26.1km² 일괄공고 (지구단위계획구역, 정비사업구역 등 제외한 지역면적임)
- 3차('19.7.) : 상업·준주거·준공업지역(정비시업 해제지역, 신규용도지역 등)이 자동 편입되도록 조례개정



▶ (지정구역) **45개 가로구역** (13.46km²)

단계	지정시기	구역수	면적(km²)
시범	'00.12.05.	2	1.15
사업	'01.03.10.		0.25
1단계	'04. 03.05.	10	4.55
2단계	'05.04.07.	13	2.06
3단계	'06.03.16.	10	3.04
4단계	'07.01.05.	9	1.96
5단계	'11.06.23.	1	0.45
	총 계	45개	13.46

▶ 용도지역 (55.5km²)

지정시기	지정대상	면적(km²)
'15.08.27.	상업·준주거·	26.0	06.1
'19.01.03.	준공업지역	0.1	26.1
건축조례개정('19	9.7.18)에 따른		58.8
현행 싱업 준주	거· 준공 업지역	*	(55.5)
	55.5		
	'19.01.03. 건축조례개정('19		'19.01.03. 준공업지역 0.1 건축조례개정('19.7.18)에 따른 현행 상업: 준주가 준공업지역 *

* 총 중복면적 3.3km²

4 한옥등록 지원제도 홍보 및 서울한옥 브랜드 개발

< 서울한옥 4.0 재창조 추진계획 > 정책 홍보, 시민체감 제고를 위해 한옥등록 지원제도 홍보 강화 및 정책 브랜드 상품 개발·판매 추진

□ 한옥등록 지원제도 가가호호(家家戶戶) 방문홍보 실시

o 대상: 서울시 한옥밀집지역(종로구 등) 일대 한옥 400여개동

ㅇ 기간 : 방문홍보 '24. 5. ~ 6. / 수선 컨설팅 '24. 7. ~ 12.

O 내용 : 서울시 한옥등록 및 지원 제도 안내 및 홍보(현장접수)

맞춤형 한옥 점검 및 수선 컨설팅 서비스 제공

< 한옥 등록 시 지원사항 >

- ▶ 한옥 수선 보조·융자금 지원,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
- ▶한옥 소규모 수선, 노후전기배전 교체, 흰개미 방제 지원
- ▶ 자치구별 세제혜택 및 거주자 주차장 우선 지원(종로구, 성북구)



□ '서울한옥'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상품 개발 · 육성

- o 추진방향 : 한옥 주거공간을 테마로 하는 '서울한옥' 디자인 상품 개발· 판매 통해 '서울한옥'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호감도 향상
- ㅇ 추진내용
 - (상품 개발) 작가 및 민간 브랜드와의 협업 통해 상품군 확보
 - ▶ 테마 기획상품(한지 조명, 목함 등 5품목), 협력 상품(디퓨져 등 3품목)



- (전시·판매숍 운영) 북촌 라운지, 서촌 안내소 활용 효과적 홍보 및 판매

□ 향후계획

ㅇ 한옥등록 지원제도 홍보/컨설팅

'24. 6.~12.

o 서울한옥 상품 런칭 전시(서촌 라운지), 브랜드 숍 오픈 '24. 8.~

한옥정책과장: 김유식 ☎2133-5570 한옥관리팀장(대): 곽민호 ☎5576 담당: 곽민호 ☎5576 건축자산문화팀장: 정미영 ☎5579 담당: 이재범/김성찬 ☎581

5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발굴 지원

인권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입주자와 관리노동자가 함께하는 모범 공동주택단지를 발굴, 지원하여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

□ 사업개요

- ㅇ 사업대상 :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
- o 사업내용: 관리노동자와 입주자가 함께하는 모범관리단지 선정·보조금 지원
 - 주민 커뮤니티시설 보수, 공용시설 냉난방장비 및 물품 구매, 구성원간 소통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
- O 선정단지: 100개단지(자치구별 현황은 붙임 참조)
- o 예산('24년) : 1,282백만원(관리주체 자부담률 10% 이상)

□ 그간 추진경위

- o 지원대상 선정 단지 통보(시 → 자치구) '24. 4. 8.
- o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수합(자치구 → 시) '24. 4.15.
- o 시비보조금 교부 및 교부결정 통지(시 → 자치구) '24. 4.24.

□ 사업 진행현황

- ㅇ 사업추진 체계
 - 서울시 : 사업계획 수립, 신청서 접수 및 선정, 보조금 교부 및 정산
 - 자치구 : 선정단지에 시비보조금 교부, 사업 지도·감독, 집행잔액 반납 등
- ㅇ 사업진행 단계별 현황

('24.5.27.기준, 단위 : 개소)

합 계	사업준비중	사업진행중	사업완료	
100	36	60	4	

※ 사전준비 : 보조금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준비 등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

□ 향후계획

o 단지별 사업진행단계 매월 모니터링(공정부진시 사업독려 등) (계속)

작 성 자 공동주택지원과장: 남정현☎2133-7130 아파트관리팀장: 문상만☎7290 담당: 장준호☎7291

참고자료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 자치구별 진행현황

(2024. 5. 27. 현재, 단위 : 개소)

						시어지해 디게	(2024, 5, 2	27. 현재, 단 사업	
연 번	ᄌ	치-	구	선정단지	<u> </u>	사업진행 단계		사업	
빈				사전준비	사업진행 중	사업완료	정산보고	잔액반납	
	합		계	100	36	60	4		
1	종	로	구	5	5				
2	중		구						
3	용	산	구	1		1			
4	성	동	구	1	1		1		
5	광	진	구	4	1	2			
6	동	대 문	구	2		2	1		
7	중	랑	구	10	3	6			
8	성	북	구	11	11				
9	강	북	구	1		1			
10	도	봉	구	10	7	3			
11	노	원	구	9		9	2		
12	아	평	구	2					
13	셔ᅵ	대 문	구	2	1	1			
14	마	포	구	2		2			
15	양	천	구	4		4			
16	강	서	구	5	2	3			
17	구	로	구	1		1			
18	금	천	구						
19	영	등 포	구						
20	동	작	구	8	1	7			
21	관	악	구	2	2				
22	서	초	구	2	1	1			
23	강	남	구	4		4			
24	송	파	구	10		10			
25	강	동	구	4	1	3			

6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전문가자문단 운영

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,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 실태조사 운영비 지원 및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단 운영으로 맑은 아파트만들기 추진에 기여

□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

o 조사방식: 시는 인력·예산지원, 구는 실태조사 실시

구 분	서울시	자치구
전 문 화	·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	•실태조사 및 행정처분
인력지원	•조사 전문가 선정 및 파견	·대상 단지 선정 및 지원 신청
예산지원	•시비보조금 지원	・보조금 신청 및 집행 ・대상 단지 및 전문가 선정

ㅇ 조사내용

-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의 부과, 징수, 집행실태
- 예산회계 운영 및 처리의 적정성, 공사 용역 발주 제반사항 적정성
- 장기수선계획 검토·조정 적정성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·집행실태 등
- o '24년 목표 : 168개 단지(24개 자치구, 서초구 미신청으로 제외)
- o 지원예산('24년): 107백만원 교부(평균 시비보조금 비율 15.24%)

□ 전문가자문단 운영

- ㅇ 자문대상 : 공사 1억원, 용역 5천만원, 구 지원사업 1천만원 이상
- ㅇ 자문내용
 - 공사 · 용역 시행 시기 타당성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검토
 - 공사 · 용역 관련 기술 자문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등
- ㅇ 자문방법 :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서 자문위원 선정 후 현장 또는 서면자문
- o '24년 목표 : 1,100건(25개 자치구)
- o 지원예산('24년) : 54,225천원 교부(평균 시비보조금 비율 28.8%)

□ 향후계획

- ㅇ 자치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결과 수합
- '24.12.

ㅇ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금 집행 결과 정산 실시

~'25, 2,

작 성 자 <mark>공동주택지원과장: 남정현☎2133-7130 아파트관리팀장: 문상만 ☎7290 담당: 장준호 ☎7291</mark> 담당: 유효한 ☎7293

③ '주거약자와의 동행'지속 추진

희망의 집수리
 안심집수리 지원사업
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
 주거급여 지원확대
 청년월세 지원

🧰 희망의 집수리

반지하 및 노후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

□ 사업개요

o 사업내용: 도배·장판 등 18개 공종 집수리 지원

집수리 공 종 도배, 장판, 단열, 도어, 방수, 처마, 창호, 싱크대, 타일, 도장 위생기구(세면대·양변기), 천장보수, 전기작업, 제습기, 곰팡이제거 안전시설(차수막·침수·화재경보기·개폐형방범창 등), 환풍기, 보일러

ㅇ 사업대상: 주택법상 '주택'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

《 2024년 기준 중위소득 》

(단위: 원)

						(EIII E)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기준중위소득 60%	1,337,067	2,209,565	2,828,794	3,437,948	4,017,441	4,571,0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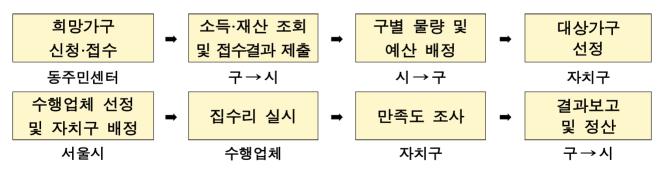
※ 기준중위소득: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

ㅇ 선정기준 : 반지하 가구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

o 지원규모: 920가구 (상반기 600가구, 하반기 320가구)

o 추진방법: (서울시) 사업총괄, 수행기관 선정, 자치구별 물량·예산배정 등

(자치구) 희망가구 신청접수 및 수행기관 사업비 교부, 만족도조사 등



o 예산('24년) : 2,300백만원(민간경상사업보조)

- 산출내역 : 2,300백만원 = 250만원 × 920가구

작 성 자 주거안심지원반장: 홍성수 ☎2133-9573 주거안심사업팀장: 신재민 ☎9588 담당: 이기택 ☎9587

□ 추진현황

o 수행업체 모집공고 '24. 1.25. ~ 2.16.

○ 상반기 희망가구 신청·모집(600가구) '24.2.1.~2.29.

※ 사업홍보 : 보도자료('24.2.1.), TBS '서울플러스'라디오 인터뷰('24.1.31.)

o 수행업체(12개) 선정 '24.3.14.

o 상반기 집수리 실시 '24.3.~ 7.

□ 향후계획

o 하반기 희망가구 신청·모집(320가구) '24. 7.1.~ 7.31.

o 하반기 집수리 실시 '24.8.~11.

o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'24.11.~12.

※ '23년 추진실적

- (목표가구) 1,772호, **(지원가구) 1,884호**, (목표달성률) 106%

※ '23년 만족도 조사결과

- (상반기) 만족도 85.7%. (하반기) 만족도 87.9%

◈ 2024년 상반기 희망의 집수리 실시 전·후 사진 ◈









<벽면 및 천장 도배>





<환풍기 교체 및 창호 설치>

<창호 교체>





<반지하 현관 방충망 설치>

2 안심집수리 지원사업

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, 재해 및 안전에 취약한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마련

□ 사업개요

- ㅇ 지원대상 : 서울시 전역의 주거 취약가구, 반지하, 옥탑방(양성화) 주택
 - ※ 취약가구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 장애인, 고령자, 한부모·다자녀 가정 등
- ㅇ 지원사업: 집수리 보조사업, 융자사업, 이자지원사업
 - (보조사업) 최대 1천 2백만원, (융자사업) 최대 6천만원, (이자지원) 은행융자의 2%
- o 지원범위: 주택성능개선 및 안전·편의시설 설치 지원
 - 성능개선(단열, 창호 등), 안전시설(화재경보기 등), 편의시설(내부 단차 제거 등)
- o 예산('24년) : 12,666백만원(보조금 8,586, 융자금 4,080)

□ 추진내용

- ㅇ '23년 집수리 보조사업 부진에 따른 방안 모색
 - 집수리 보조사업 전문가 및 자치구 회의를 통한 개선안 마련('24.1.)
 - ▶ 집수리 보조사업 **하자보증보험 가입** 권장 사항에서 **의무화**로 변경
 - ▶ 중위소득기준 완화(70%→100%)에 따른 참여 확대 및 절차 간소화
- ㅇ '24년 집수리 보조사업 적극 추진에 따른 목표(600건) 초과 달성
 - 보조사업 참여자 보조금 심의를 통한 1,007건 지원결정('24.1.~5.)
 - ▶ 1~2회(1~3월) 보조금 심의 562건 지원결정 및 3회(5월) 보조금 심의 445건 지원결정 ※ 보조금 심의 예정 건수(약 400건)에 대해 참여자 취소 실태파악, 예산확보 등 대안모색
- ㅇ 융자·이자사업 참여자 모집 지원 대상자 선정('24.2.~5.)
 - (대상선정) 융자·이자 지원 대상자 60건 선정('24.5.)
 - (지원절차) 신청→ 사전검토(구)→ 대상자선정(시)→ 공사완료→ 융자금 지급(금융기관)

□ 향후계획

ㅇ 보조금대상자 심의, 융자대상자 선정, 공사실시 및 완료 '24.하반기

작 성 자 주거환경개선과장: 최재준 ☎2133-7240 안심집수리지원팀장: 김선호 ☎7259 담당: 김병곤 ☎7260

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

쪽방, 고시원, 판잣집 등 비주택과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비 및 정착지원 강화를 통한 주거 안정 도모

□ 사업개요

- 대상: 쪽방·고시원·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과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가구 ※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~70%이하
- ㅇ 지워내용
 - 공공(LH,SH) 및 민간 임대주택 입주지원
 - 공공(300만원) 및 민간 임대주택(5천만원) 보증금 무이자 융자
 - 이주비(40만원) 및 지역 복지자원·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맞춤형 정착지원
- o 예산('24년) : 7,476백만원(국비 3,738백만원, 시비 3,738백만원)

□ 추진현황('24.4.30. 기준)

- ㅇ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상시 상담 : 20,681건
- o 입주완료 : 1,540가구(LH 1,212가구, SH 228가구, 민간 100가구)
- o 입주이후 이주비(이사비·생필품비) 지원 : 1,074가구
- ㅇ 입주 이후 자립을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 : 303가구

□ 향후계획

- ㅇ 주거취약가구 밀집지역 현장상담소 운영 '24. 6.~
- ㅇ 주택물색 도우미 배치로 주택물색, 이주지원 등 맞춤지원 '24. 6.~
- ㅇ 입주절차 간소화를 위한 5개 권역 신규 계약 개소 '24. 6.~

4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

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 추진

□ 사업개요

ㅇ 사업근거 : 주거급여법 제1조 및 제3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2항

ㅇ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48%이하 가구

가구원 수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주거급여	'23년(47%)	976,609	1,624,393	2,084,364	2,538,453	2,975,423	3,397,151	3,810,532
(원/월)	'24년(48%)	1,069,654	1,767,652	2,263,035	2,750,358	3,213,953	3,656,817	4,087,197

※ 기준중위소득 '19년 44%→ '20년 45%→ '22년 46% → '23년 47% → **'24년 48%**

※ 정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'24~'26)에 따라 주거급여를 단계적으로 50%까지 상향 예정

o 지원내용: 임차급여(현금) 및 수선유지급여(현물) 지원

o 예산('24년): 784,816백만원 (국:시:구=60:28:12)

□ 추진실적

o 지원인원 및 지급액('24년): 31만5천 가구 2,729억원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 4월	
지원가구 (가구)	278,602 292,865		308,848	315,283	
지원인원 (명)	383,267	395,587	412,756	420,198	
집행액 (백만원)	572,594	635,421	698,550	272,937	

□ 추진일정

ㅇ 자치구 신청에 따른 주거급여 교부(시→자치구) 매월 15일

ㅇ 급여신청 자격 상향에 따른 대상자 발굴(수시) '24. 1.~

o '23년 주거급여 정산 확인 및 반납(시→국토부) '24.12.

보조금 소득재산조사 공적자료조회 공적자료확인 급여결정 신청접수 급여지급 교부신청 (구청) (구청) (구청) 통보 (신청자 (구 주택조사의뢰 주택조사 주택조사 회신 및 교부 (구 →주민센터) →신청자) (구→LH) (LH→구청) →신청자)

작 성 자 주거안심지원반장: 홍성수 ☎2133-9573 주거안심계획팀장: 강윤희 ☎9580 담당: 손다래 ☎9582

5 청년 월세 지원

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(내 집 마련, 결혼, 출산, 양육)로의 성장 지원

□ 사업개요

- o 지원대상: 서울시 월세 거주 청년(만19세~39세) 1인 가구
 - (거주요건)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
 - (소득요건)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- **(재산요건)** 일반재산*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
 - * 토지과세표준액, 건축물과세표준액, 임차보증금, 차량시가표준액

구 분	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	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지원대상	만19~39세 청년 1인 기구	만19~34세 청년 독립 가구
소득요건	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※ '24년 1인가구 기준 334만원	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※ '24년 1인가구 기준 133만7천원
거주요건	보증금 8,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(전환율 적용 96만원) 이하	거주요건 폐지('24.4.12.~)
급여지급	격월로 월 20만원 한도 12개월분 지급	매월 월 20만원 한도 12개월분 지급
신청방법	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	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
예산보조율	시비 100%	국비 30% 시비 70% 매칭

o 지원내용: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(최대 240만원) 지원 ※ 생애 1회

○ **지원규모** : **25,000명** ※ 정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별도 추진중, 22,335명 선정('24.4.기준)

o 소요예산('24년) : 50,867백만원 (지원금 50,000 / 대행사업비 등 867)

□ 추진현황

구 분	계 ('20년~'23년)	2020	2021	2022	2023	2024
선정인원	89,770명	5,000명	27,000명	30,000명	27,770명	25,000명 예정

※ '24년 40,290명 신청접수('24.4.3.~4.23.), 심사 중

□ 향후계획

o '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최종선정

'24. 7.

o '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급여 지급 및 관리

'24. 8.~

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: 공병엽 ☎2133-7010 청년주거안심팀장: 이영희 ☎7701 담당: 임예은 ☎7704